

# 대학원 식량생명공학과 운영 내규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식량생명공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식량생명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식량생명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식량생명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식량생명공학과 주임교수 및 학과 교수들이 협의하여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과목개설)** 식량생명공학과 교육과목개설은 이수계획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임교수 및 학과 교수들이 협의하여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식량생명공학과 교·강사 배정에 필요한 사항을 학과교수들이 협의하여 심의한다.

##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1.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2년(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2.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선정된 논문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으나 전공의 변경, 지도교수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과정은 박사학위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 과정을 적용한다.

##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accepted 시 면제(제1저자)
  - 나.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제1저자) 논문게재 시 면제
  - 다.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제1저자 포함) 2편이상 논문게재 시 면제
- ※ 해당 증빙자료(별쇄본, 게재증명서, 게재예정증명서 등)는 종합학력시험 신청 기간 제출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한다.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함.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2018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는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는 한국어만 선택 가능하다.

##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을 기본으로 하고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학위논문, 연구논문 중 택1)을 선택하여 지도교수·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연구논문 선택시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계획서는 졸업 학기의 한 학기 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을 하며 식량생명공학과 전임교수가 심사한다.

**제14조 (예비발표)** 예비발표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학생은 졸업 학기 중에 시행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1. 학위논문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학과 전임교수3명, 박사학위 논문은 학과 전임교수3명 외 외부2명)이 한다.

2.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3. 논문심사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2/3,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과정 3, 4학기 재학생 및 수료자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승인을 득하면 연구논문으로 논문대체가 가능하며, 연구논문은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한다. 연구논문의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석사과정 3, 4학기 재학생 및 수료자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에게 승인을 득하면 연구논문으로 논문대체가 가능하며, 학과로 연구논문 제

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를 하드카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출 자료는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